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14.

제 출 자 : 사 하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분뇨관련 수거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수거물량 감소와 4년동안 유류비, 차량수리비,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수거비용 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현행,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에 규정된
·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: 10ℓ 당 당초200원 ⇒320원(60%)로 조정

3. 관계법령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별표2” 를 “별지1” 과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1”

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(제8조제1항관련)

[별표2]

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 용 기 준
분뇨수집· 운반수수료	10ℓ	32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. · 배출자로부터 수집·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분뇨수집 · 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(제8조제1항관련)

[별표2]

현				행				개				정				안			
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	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	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	구 분	부과기준	수수료	적용기준				
분뇨수집 운반수수료	10ℓ	200원	○부산광역시 분뇨 처리에 따른수수 료 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 가 포함된 금액 임	10ℓ	320원				
			○배출자로부터 수 집·운반하는 양 에 따라 징수한 다.	